

「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3년 11월 3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사업 및 위탁 등(안 제5조~제6조)
- 예방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 등(안 제7조~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11. 3. ~ 2023. 11. 9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 조례 제 호

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을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
2.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
3.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,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)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
2.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
3. 스토킹범죄 피해자 상담, 치료, 법률지원 등 회복 증진 사업
4.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
5. 그 밖에 스토킹범죄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해 「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의 위탁)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예방 교육 등)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2차 피해(피해자 등 신상정보의 유출, 피해자 등 권리구제의 방해,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·폭언,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)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, 인식개선 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수사기관, 전문가

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성 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